#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906 발의연월일: 2024. 12. 24.

발 의 자:조인철・황정아・최민희

박민규・김 현・정동영

이훈기 · 노종면 · 김우영

이정헌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이하 "문화방송"이라 함)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 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방송문화진흥회의 9인 이사 모두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사회의 이사 구성에 따라 방송문화진흥회가 문화방송 운영 및 사장의 임명제청에 있어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의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이사회를 각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구성하여 방송문화진흥회와 문화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공적 책임을 높이고자 함(안 제6조, 제6조의2, 제8조, 제9조).

법률 제 호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9명"을 "13명"으로, "한다"를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방송에 관한 전문성"을 "제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방송에 관한 전문성, 지역"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 1.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명
-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 람 4명
- 3. 방송통신위원회가 활동기간, 활동내용, 회원 수를 기준으로 선정한 3개 이상의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2명. 단. 추천된 2인 중 1인은 지역방송 분야의 전문가여야 한다.

- 4. 방송 전문성과 방송 보도, 제작, 기술 등의 직종 대표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명
  - 가. 방송기자연합회 추천 1명
  - 나. 한국피디연합회 추천 1명
  - 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추천 1명
- ⑤ 제4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체는 이사 추천 시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공모·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6조의2(이사의 자격요건) 이사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소관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방송학·언론학·전자공학·통신공학·법률학·경제학·경영학· 행정학 그 밖에 방송·언론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 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2. 방송·언론 관련 단체나 기관의 임직원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3. 방송·언론 분야의 이용자 보호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이 15년 이상이 되는

사람

제8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또는 같은 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한정한다)의 이사 또는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9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0조제10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사의 자격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가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원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원의 구성기준에 저촉되는 방송문화진흥회는 이법 시행 이후 2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제4조(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방송문화진 흥회 임원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임원) ① 진흥회에는 임원	제6조(임원) ①				
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u>9명</u>	<u>13명</u>				
의 이사와 감사(監事) 1명을 두					
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u>한</u>					
<u>다</u> .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u>다</u>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이사는 <u>방송에 관한 전문성</u>	④ <u>제6</u> 조의2 각 호의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고려하여 <u>방송통신위원회가</u> 임	중에서 방송에 관한 전문성, 지				
명한다.	<u>역</u>				
	<u>다음 각 호에 따라</u>				
	추천된 사람을 방송통신위원회				
	<u>プ</u>				
<u> &lt;신 설&gt;</u>	1.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				
	었던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명				
<u>&lt;신 설&gt;</u>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				
	<u>하는 사람 4명</u>				
<u>&lt;신 설&gt;</u>	3. 방송통신위원회가 활동기간,				

<신 설>

<신 설>

 ⑤
 감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

⑥ (생략)

<신 설>

활동내용, 회원 수를 기준으로 선정한 3개 이상의 방송· 미디어 관련 학회가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2명. 단, 추천 된 2인 중 1인은 지역방송 분야의 전문가여야 한다.

4. 방송 전문성과 방송 보도,
 제작, 기술 등의 직종 대표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명
 가. 방송기자연합회 추천 1명나. 한국피디연합회 추천 1명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추천 1명
 천 1명

⑤ 제4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 체는 이사 추천 시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이 를 위한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 하여야 하며, 공모·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 <u>⑥</u>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제6조의2(이사의 자격요건) 이사 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 고 소관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흥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 6. (생략)

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 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방송학 • 언론학 • 전자공학 • 통신공학 · 법률학 · 경제학 · 경영학ㆍ행정학 그 밖에 방송 • 언론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 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방송 · 언론 관련 단체나 기 관의 임직원의 직에 10년 이 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방송·언론 분야의 이용자 보호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 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력 을 합산한 기간이 15년 이상

이 되는 사람

제8조(역	임원의	결격/	사유)	(1)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생략)

제9조(이사회의 구성) ① ~ ③ 제9조(이사회의 구성) ① ~ ③ (생 략)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 신설>

(5) • (6) (생략)

- 7.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방 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또는 같은 법 제2조제3호라목 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 사용사업자에 한정한다)의 이 사 또는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 한 사람
- ②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 다만, 제 10조제10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5)·(6) (현행과 같음)